



질병관리청

# 질병관리청



질병관리청 콜센터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종료안내

## 1. 관련

- 가.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부칙(보건복지부령 제898호) 제2조
- 나.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-2478(2023.6.29.)호, 3087(2023.8.10.)호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안내하였던 계도기간이 9.30.로 종료되는 바, 소속 의료기관 내의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전달·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 본 건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, 「결핵예방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점 함께 전달·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\* 관할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부과. 끝.

## 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

책임연구원 김가희      결핵정책과장 전결 2023.9.12.  
최호용

협조자

시행 결핵정책과-3492      (2023. 9. 12.)      접수

우 28159    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/ http://kdca.go.kr  
결핵정책과

전화번호 043-719-7927      팩스번호 043-719-7334      / gaheekim@korea.kr      / 대국민 공개